

부산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제1차 룰미팅

발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예비후보자
일시: 2023년 11월 3일 20시 10분
장소: 문창회관 3층 대회의실
기록물 책임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요섭

I. 출결 점검(가나다 순)

시간	위원장	부위원장	간호대	경영대	경통대	공과대	나노대	동아리 연합회	사범대	사회대	생자대
	김요섭	이준호	강효은	심혁	채민	정지석	여택원	최종일	최용권	박민지	김지윤
20:10	o	o	x	o	x	x	x	x	x	o	x
시간	생과대	약학대	예술대	의과대	인문대	자연대	정의대	치의전 학사과정	한의전 학사과정	선거 집행위원	선거 집행위원
	장정윤	이수연	유다영	이병주	최기혁	최한결	이성주	정해린	최태영	김세현	정재훈
20:10	x	x	x	o	o	o	x	x	x	o	o
시간	예비 선거운동본부 A			예비 선거운동본부 B			예비 선거운동본부 C				
	회장후보	부회장후보	본부장	회장후보	부회장후보	본부장	회장후보	부회장후보	본부장		
20:10	o	o	o	o	o	x	-	-	-		

※ 총 재석인원 : 14명

II. 보고안건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

III. 논의안건

- 1.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등록에 관한 건
- 2.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운영에 관한 건
- 3.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에 관한 건

IV. 기타안건

- 1. 그 밖에 제1차 룰미팅에서 논의할 사항

II. 보고안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련 안내

□ 후보자 등록 서류(선거시행세칙 제29조)

- 재적증명서 1부,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추천장(500명 이상) 1부,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공정선거 서약서 1부, 선거운동원명단 1부 제출 및 기탁금 납부 확인 후 후보자등록증 발급
- 재적증명서, 후보자등록 신청서, 공정선거 서약서, 선거운동원 명단 또는 기탁금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등록신청기간에 가등록신청서 제출 시 후보자 가등록 가능
- 가등록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여서 제출해야 함
- 선거운동규칙 제21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시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

□ 후보자 추천서명(선거시행세칙 제31조 및 선거운동규칙 제5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한 추천장에 **500인 이상 추천서명**을 받아야 한다
- 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 어느 일방에 대한 추천서명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 추천서명을 받는 활동을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학내에서 직접 선거권자를 대면하여 후보자등록기간의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가능하다.

□ 기탁금(선거시행세칙 제32조 및 선거운동규칙 제6조)

- **회장후보와 부회장 후보는 각각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탁금의 액수는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의 2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9,620\text{원} \times 20 = 192,400\text{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의 사유를 제외하고 개표결과를 공표한 날로부터 7일 후에 기탁금 전액을 환급한다.
- 개표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후보에서 사퇴한 경우 : 50%에 상당한 금액만 환급
- 경고 3회 이상 누적으로 선거운동본부가 해산된 경우: 미환급
- 후보자의 책임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 미환급
- 선거시행세칙 제33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 미환급

□ 선거운동원(선거시행세칙 제32조 및 선거운동규칙 제6조)

- 각급 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된 회원, 학생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회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다.
- 선거운동원 명단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며 이후에 선거운동원의 추가, 삭제, 변경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된 회원만 가능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원 확인증을 눈에 보이는 곳에 지참해야 한다.

위원장 : 룰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음. 해당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선거 일정의 변동은 없을 예정임. 선거 관련하여 4가지 정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음. 우선 후보자 등록 서류임. 오늘 1차 룰미팅을 진행하고 나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후보자 등록 기간이 시작됨. 후보자 등록 기간동안 해당 자료를 준비하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함. 필요한 서류는 각 후보자들의 재적증명서임. 재적증명서라 함은 재학증명서 혹은 휴학증명서임. 다음으로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추천장임. 추천장에 500명 이상이 날인한 자료 1부가 필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전체 검증 예정임. 추천장에는 학번, 이름, 서명란이 있음. 학번과 이름

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받아진 서명인지 확인할 예정임. 대리 서명 등의 문제에 대해 검증할 예정임. 추후 나눠드릴 후보자 등록 서류는 총 2개로 나눠서 드릴 예정임. 정후보와 부후보가 각각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드릴 것이며, 정후보와 부후보의 동일한 사람에 대한 서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검증할 예정임. 이를 제외한 추천인이 5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중복인에 대한 서명 및 오류 명단을 제외했을 시 500명 이하가 될 경우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넉넉히 받아주시기 바람. 다음으로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임. 소정의 양식으로 이루어져있고, 공정선거 서약서 또한 소정의 양식으로 이루어져있음. 선거운동원 명단 1부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인원 제한이 있음. 다만, 선거운동원 명단의 경우에 혹시 수정을 거쳐야 될 경우 협의를 거쳐 공문을 통해 수정할 수 있음. 앞선 자료들이 모두 확인된 이후 후보자 등록증이 발급될 것이며, 선거 후보자 추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의 발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등록 신청 기간에 제출을 완료하면 자료가 다소 미비하더라도 등록이 가능함. 그러나 추천장은 본등록 기간 안에 제출해 주셔야 함. 단면 추천장 오른쪽 상단에 직인을 찍음. 그 직인이 날인된 추천장에만 서명을 받을 수 있고 직인이 날인되지 않는 종이의 서명은 모두 무효처리가 됨. 종이가 모자르실 경우 연락 주시면 추가 발급 해드리도록 하겠음. 추천 서명이 가능한 시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6일부터 8일까지임. 6일부터 8일까지 입후보 하는 자만 추천 서명을 받을 수 있음.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돕는 분들이 주위에서 같이 안내하는 건 괜찮지만 서명을 받는 자는 반드시 후보자들이어야 함. 선거 운동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추천 서명 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서명받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임. 그리고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함. 이 외의 시간에 추천 서명을 받으시다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접수될 경우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점 이해 바람. 다음은 기탁금 납부임. 기탁금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각 후보들이 룰 안에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미의 보증금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음. 기탁금은 저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의 20배 범위 내에서 192,40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 각각 고지한 계좌로 192,4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선거가 제대로 완료될 경우에는 기탁금을 모두 환급해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는 기탁금 일부만 환급하거나 환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거운동원임. 선거운동원은 선거시행세칙 제32조 및 선거운동규칙 제6조에 따라서 각급 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된 회원 그리고 학생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회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될 수 있음. 쉽게 말해서 선거운동원이 총학생회나 단과대학 학생회 혹은 학과 학생회 소속이 아닌 자여야 함. 또한 다른 단과대 학생회의 선거운동 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면 안 됨. 선거운동원 명단을 받으면 각 단과대학 혹은 학과에 조회할 예정임. 선거운동원 명단은 후보자 등록할 때 제출하지만 추가 삭제 변경이 가능함. 이 경우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 주시길 바람.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바로 승인 해드립니다. 그러나 명단을 받았을 때 사퇴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 선거운동원 자격이 박탈됨. 또한 선거운동 본부에 소속된 회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선거운동원 확인증이 있음. 선거운동 확인증에는 사진과 학원 이름이 날인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곳에 지참해야 함. 일반적으로 목걸이 형태로 배부됨. 질문 받겠음.

이창준 : 방금 말씀하신 것 중 선거운동원 확인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해 주시는 것인지 혹은 직접 제작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함.

위원장 : 양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할 것이며 제작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며, 디자인 등에 대한 제작을 해오시면 검토 후 승인할 예정임. 저희가 제작하는 경우 기본 양식은 흰 바탕에 사진과 이름 기입란이 포함될 예정임.

이장은 :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양식을 통일하면 좋겠음.

위원장 : 2차 롤미팅 때 해당 내용을 다루어 여부를 결정하겠음. 기본 방침은 제작하실 시 검토 후 승인,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작하여 발급드릴 예정임.

III. 논의안건

1.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에 관한 건

(1) 후보자 번호 부여

- 추천서명인수가 많은 후보자 순서대로 번호를 정하는 방법
- 후보자등록서류를 먼저 제출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
- 랜덤으로 후보자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

위원장 : 선거운동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은 협의 가능함. 선거 시행 세칙에 있는 내용은 협의할 수 없음. 후보자 번호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현재 참여한 예비 선거 본부 두 곳을 제외하고 후보자 등록 기간에 후보자 소정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 가능함.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가중치를 두고 있지 않은데, 예비 후보자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임.

이장은 : 저희는 추천서명인수가 많은 후보자 순서대로 번호를 정하는 방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함.

이창준 : 동의함.

위원장 : 확정하겠음.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추천 서명 인수를 개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8일에 제출하실 경우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하고자 하나, 하루 내지 이틀정도 지연될 수 있음을 알림.

이장은 : 후보자 등록 공고 때 작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위원장 : 후보자 등록 공고 전에는 할 것이고, 최대한 빠르게 개수하여 통지 및 공고하겠음. 후보자 등록 기간에 서류 제출하실 때 저희 쪽으로 각 선거운동본부의 대표 이메일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음. 대표 이메일로 공문 통지를 할 것이며, 동시에 전화를 드릴 예정임. 먼저 전화 받으신 분이 번호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됨.

(2) 선거운동본부 고유 색 지정

- 선거운동본부 희망 색
- 겹쳤거나 유사한 경우 조정할 것인지

위원장 : 다음은 선거 운동 본부 고유색임. 현재 경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함.

이창준 : 희망하는 색 없음.

이장은 : 저희는 예비적으로 하늘색 해두겠음.

위원장 : 현재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유사할 경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함.

이창준 : 바꿀 필요까지는 없어 보임.

이장은 : 동의함.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음.

인문 : 이의없음.

위원장 : 그렇다면 선거 운동 본부 이름이 겹치는 경우 조정은 어떻게 할지 여쭙겠음.

선거집행위원 정재훈 : 정해두신 이름이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 제출하면 위원장님이 확인하시는 방법을 건의함.

이장은 : 고려 중임.

이창준 : 준비되지 않음.

위원장 : 8일 제출하시면 확인하여 보겠음.

이창준 : 정해지는 대로 연락드리는 건 어떤지 궁금함.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회의가 아닌 어떤 수단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함.

부위원장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후 협의회 구성은 가능하며 공식적인 창구를 만든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음. 다만, 후보자 등록 기간에 그랬던 사실은 알기로 없었음.

위원장 : 오늘 내용을 회의 기록으로 남겨두고 11월 6일에 새로운 선거 운동 본부가 출마 의사를 밝혔을 때도 이를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여서 적어도 11월 7일 오후 3시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 선거 운동 본부의 예정 이름을 제출해 주시면 됨. 문제 없을 시 회신하지 않을 예정임. 메일 주소는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운영에 관한 건

(1) 선거운동본부 사무실 지원

- 문창회관 그룹스터디룸 지원 가능
- 각 선거운동본부 희망 사무실
- 후보자등록 이후 선거운동본부 사무실 이용 가능

위원장 : 선거 시행 세칙 제52조 총학생회장단 선거 운동 본부 운영에 관한 내용임.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정도로 나와 있음. 현재 문창회관이 리모델링 중이라 넓은 공간을 제공해 드리기 힘들 거 같고 양 선거 운동 본부가 동일한 크기의 공간을 제공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에 문창회관 그룹 스터디룸 A, B를 지원할 예정임. 이외에 각 본부에서 선거 운동 본부가 희망하시는 사무실이 있으실 경우 알려주시길 바람. 예정된 장소가 있다면 통지해 주시길 바람에 없으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장소 두 곳을 임대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하실 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장은 : 관례적으로 문창회관에서 총학생회장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만약 다른 건물을 사용한다면 통제도 필요해 보임.

위원장 : 타 건물 임대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단과대학 소속 건물 등은 선거 운동 본부만을 위하여 제공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선거 운동의 모호함의 문제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총학생회에서 제공하는 건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건의함. 추후 현재 두 본부를 포함하여 세 본부 이상이 될 시에 장소 제공 관련하여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가 필요함.

이창준 : 30명 이상이 들어가기에 상당히 협소하다고 여겨져 우려됨.

자연 : 현재 룸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창회관 3층 대회의실을 대여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함.

위원장 : 선거 운동과 관련된 준비물들이 선거 운동 시간이 아닐 때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우려되어, 총학생회에서 사무실을 두 곳 임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강의실이나 대회의실 등을 임대하도록 하겠음.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회의실 같은 경우 회의 24시간 전에 연락이 필요함. 대관이기 때문에 총학생회 자체 대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음. 대관 최대 시간은 1일 4시간임.

(2) 선거운동본부 비품 지원

- 소모성 물품(잉크, 인쇄지 등) 대여 불가
- 타카, 가위, 풀 등 비소모성 물품 대여 가능(단,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반납해야 함)

위원장 : 다음으로는 선거 운동 본부에 대한 비품 지원에 관한 논의임. 현재 잉크, 토너, 인쇄지 등은 저희가 좀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벽보를 붙이는 데 사용되는 도구 같은 경우는 지원 가능함. 사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람. 그러나 수령 기간이 촉박한 경우 후보자 등록 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선거 운동 본부 사무실을 제공해 드릴 때와 시간을 맞추어서 신청서 양식을 드리도록 하겠음.

이장은 : 프린터나 인터넷정도 제공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어려운지 질문 드림.

위원장 : 흑백 프린트까지는 제공할 수 있음. 추후 다시 논의하였으면 좋겠음.

이창준 : 화이트보드 지원이 됐으면 좋겠음. 부족해서 구비하는 건 괜찮은 지 궁금함.

위원장 : 상관 없고, 우선 빌려드릴 예정인 공간의 한 쪽 벽면은 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길 바람. 또한 빌려드릴 공간의 문이 부분적으로 투명하여 외관 마감에 대한 부분은 선거 운동 본부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음.

이창준 : 볼펜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3.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에 관한 건

(1) 합동토론회

- 제13조(합동토론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1회 이상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후보자는 합동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 ② 합동토론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후보자등록을 완료한 후보자가 단수인 때에는 후보 초청 공청회로 합동토론회를 갈음한다.

- 합동토론회 진행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 룰미팅 논의 후 일정 최종 확정

위원장 :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달 사항 정도로 진행하고자 함. 우선 합동토론회에 관한 이야기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합동토론회 일자는 11월 21일 화요일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미리 통지해 드리고 합동 토론회는 반드시 참석임. 개인 마이크 유세 같은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가능하지만, 합동토론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다만, 이 내용은 11월 8일 후보자 등록 기간을 마친 이후에 후보자 등록이 최종 완료된 선거 운동 본부와 함께 토론회 일자나 그다음에 방식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다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2) 선거비용

가. 학생회비 선거보조금

- 후보자등록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각 선거운동본부 계좌에 선거보조금(학생회비 재원) 지급 예정
- 선거보조금은 선전물을 제작하는 것에만 지출 가능
- 선거보조금 잔액 발생 시 총학생회 반환
- 총학생회 선거보조금 관련 예산 1,500,000원(500,000원 * 3개)
- 4개 이상 선거운동본부 등록 시 1,500,000원 내에서 분할 지급하며, 3개 이하 시 500,000원 지원
- 선거운동본부는 선거비용 지출 전체에 대하여 결산안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결산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 증빙서류 누락 시 학생회비 선거지원금에서 금액 환수

나. 대학회계 선거지원금

- 선거운동본부 요청 시 대학회계 일부로 지원 가능(보조금 지급형태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대학 본부에서 지출을 대신함)
- 대학회계 지원금 또한 선전물을 제작하는 것에만 지출 가능하며 1,000,000원 이내 지원

- 선거시행세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선거보조금의 용도 제한
- 선거보조금 제한 논의

위원장 : 학생회비 선거보조금을 통해서 각 선거 운동 본부 당 500,000원을 후보자 등록 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선거 운동 본부에 500,000원을 송금해 드림. 다만, 해당 500,000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선거 비용 중에서도 선전물 제작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만약을 대비하여 후보자 기호가 11월 8일 늦은 밤 혹은 9일 오전에 나오기 때문에 인쇄하실 때 기호란을 비우고 인쇄하시어 해당 일자에 맞추어 번호를 추후에 기입하는 방법이 시간 관계상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기호가 결정됨과 동시에 선거 운동 본부 지원금을 바로 송금해 드리도록 하겠음. 그리고 선거 운동 본부가 선거에 사용하는 총비용이 3,00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음. 선거 운동 규칙과 선거 시행 세칙을 참고하시면 됨. 3,000,000원에 앞서 말씀드린 500,000원이 포함되는 점 알림. 그러나 식대비 혹은 비슷한 종류의 비용은 선거 운동 지원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단체복 구매나 홍보물 제작비, 선거용 사무비품 구매비 같은 부분은 지원드릴 예정임. 이후 최종 결산을 받았는데 결산 처리 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 후 문제가 될 수 있음. 결산 작성 및 증빙자료 구비는 당연한 내용이며 증빙 서류가 누락될 경우 순차적으로 선거지원금부터 회수함. 대학회계 선거지원금도 있음. 대학회계 선거지원

금은 소정의 서식을 갖추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해주시면 인쇄 대행 해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선거 운동 본부당 1,000,000원까지 지원 가능함. 선전물 제작만 포함된 금액이며 이외의 다른 물품 구매는 불가함.

(3) 일반선전물

- 일반선전물 규격 및 개수 논의

위원장 : 다음으로 일반선전물의 규격과 개수에 관한 부분이 있음. 선거 운동 규칙 제15조 일반선전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차 의결된 바가 있기 때문에 확정임.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2차 룰미팅 때는 등록된 선거 운동 본부 자격으로 참여하실거고 요청하신 사항들은 선거 운동 규칙에 반영하여 최종 개정되어 확정될 예정임. 우선 선거 운동 본부에서 희망하시는 내용을 들어보고자 함. 제15조 제2항을 보시면 선전물 개수와 규격을 규정하고 있음. 포스터, 현수막, 유인물의 크기를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포스터와 현수막은 부착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나누어 드리는 경우 유인물이 됨. 포스터 300장, 현수막 50개, 유인물 20,000부 모두 수량은 충분하나, 추가가 필요하시다면 일단 신청을 받겠음.

이장은 : 괜찮은 것 같음.

이창준 : 동의함.

위원장 : 유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나가겠음. 유인물 20,000부는 양면 기준임. 단면만 뽑더라도 한 부임.

나가는 수량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쉽게 말해서 최대 수량이 20,000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음.

(4) 선전물 승인

- 일반선전물(포스터, 유인물, 현수막) 사용 1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후 직인 날인(시안 제출로 사전승인 가능)
- 특수선전물 사용 1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후 승인(시안 제출로 승인 가능)
 - 제출 시안과 사용 선전물이 같아야 함
- 온라인선전물의 경우 게시 4시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후 승인

- 승인 시각 조정 필요시 논의 필요

위원장 :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선전물 승인에 관한 얘기임. 일반선전물 포스터, 현수막, 유인물의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24시간 이전에 제출해 주셔야 함. 포스터, 현수막, 유인물 모두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며 상대 본부에 대한 비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다음으로는 선거 시행 세칙 제61조를 참고하시길 바람. 위 조항에 해당하는 포스터, 현수막, 유인물에 포함된 경우에 포함될 경우에 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 그 외에 내용은 내용을 검거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정, 부 후보자들의 성명, 학번, 학과 사진까지 포함되어야 함. 24시간 전에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용 기준이라 예를 들어 11월 21일 사용하시게 되면 사용 기준 2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셔야 함. 선거 운동 기간 전체에 사용할 유인물들을 하루 전에 다 주실 필요는 없고 사용하기 하루 전에 해당하는 내용만 주시면 됨. 보통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걸어놓으면 보통 철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고 하루 전에 제출만 해주시면 승인 절차를 거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음. 다음으로 시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함. 선전물의 출력은 완료 되었으나 물리적인 한계로 도착하지 않은 경우, 사용 하루 전에 시안을 제출해주시면 같음하여 승인해드리겠음. 다만, 도장은 찍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전에 완성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그러나 온라인 선전물은 내용이 다름. 온라인 같은 경우는 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에브리타임, 마이피누 등에 올리는 각종 게시글들은 업로드 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람. 한 가지 부탁드릴 점이 있는데, 선거 운동 시간이 오전 8시에 시작 되는데, 새벽 4시에 제출하시는 경우 즉각적인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확인 가능한 시간에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함. 해당 내용들은 모두 메일을 통하여 제출하시게 될 것이며, 협의를 통하여 더 편리한 방법이 있다면 변경할 의향도 있음. 전화를 주실 경우 바로 응대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음. 해당 내용 확정하도록 하겠음.

(5) 공동정책자료집

- 총학생회장단,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학과 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전체 후보자 및 공약 소개
- 15일(수) 오전 10시까지 제출

• 공동정책자료집 양식은 후보자 등록 완료 시 배부 예정

위원장 : 마지막으로 공동정책자료집에 관한 내용임. PDF 파일 형태로 제작이 되어 각 선거권을 가진 학생분들께 문자로 발송 해드리고 있는데, 공동정책자료집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와 단과대학 학생회장, 학과 학생회장 선거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발송해드리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11월 15일 오전 10시까지 공동 정책 자료집을 제출하셔야 함. 양식은 정해져 있고, 각 선거운동 본부마다 추가적으로 공약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작하여 넣는 것도 가능함. A4 규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페이지 수를 제한하고자 하신다면 협의를 거쳐서 제안할 수 있음.

이장은 : 말씀하신 대로 해도 상관없을 거 같음.

이창준 : 제한 둘 필요 없을 거 같음.

위원장 : 주시는 대로 넣도록 하겠음.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 추가로 제출된 서류는 받지 않고 1페이지만 들어가게 됨. 또한 사진들 같은 경우는 학적부에 있는 사진으로 올라감. 따라서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시간을 엄수하셔서 제출하셔야 하고, 양식 같은 경우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각 선거운동 본부에 공문으로 배포 해드릴 예정임.

IV. 기타안건

1. 그 밖에 제1차 롤미팅에서 논의할 사항

위원장 : 질문 받도록 하겠음.

이하은 : 선거 운동 본부 사무실 앞에 포스터나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함.

위원장 :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문에 부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음. 두 본부가 협의만 하시면 선거 운동 본부 사무실에 한하여 입구에 붙이는 것은 한 장정도 허가할 수 있을 것 같음. 해당 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측면에서 유용할 것 같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붙이는 것들이 있음. 선거 운동 사무실이라는 내용과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용한다는 공고를 붙임.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음. 추가 질의 있으면 해주시길 바람.

이하은 : 선거 운동 할 때 정후보, 부후보 혹은 선거운동원이 본인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명함 등을 나누어준다면 유인물에 해당 되는지 궁금함.

위원장 : 단순히 명함에 공약이 들어가고 선거 운동 본부의 이름과 슬로건, 후보자들의 사진 정도라면 특수 선전물 정도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 공약 사항이 들어가거나 한다면 유인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단순 후보자를 알리는 정도라면 특수 선전물로 볼 수 있는 것임. 방금 문의 주신 내용을 한 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음.

이장은 : 선거 본부 활동 개시의 기준이 공고 이후인지 궁금함.

위원장 : 그러함.

이장은 : 등록 공고 이후면 후보자 등록 기간이 3일인데, 6일에 기준을 충족 시키는 분량의 제출이 이루어지더라도 6, 7, 8일이 지나 9일 이후로 활동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림.

위원장 : 공식적인 선거 활동은 9일 이후로부터 가능하며 선거 운동 행위는 14일부터 가능함. 다만, 관례적으로 후보자 등록 기간에 선거 추천 서명을 돕는 행위는 허가하고 있음. 선거운동원 명단을 제출하실 때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선거운동원이 아님. 그러나 정후보, 부후보만 추천 서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그분들이 직접 서명을 받을 수는 없음.

이창준 : 11월 4일 혹은 5일에 특수선전물 승인을 받고 11월 6일부터 8일까지 명함을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함.

위원장 : 불가능함. 아직 선거운동 본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어려움.

부위원장 : 서명을 받는 활동만 예외적으로 선거 시행 세칙에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음.

위원장 : 추가 질의 10분 간 받고 롤미팅을 마무리 하겠음. 또한, 제공해 드리는 각종 서식은 기본적으로 선거 시행 세칙에 다 별지 서식으로 들어가 있음. 혹시나 어떤 건지 내용을 아셔야 될 경우는 그걸 보시면 되

겠음.

이창준 : 후보자 추천장을 받을 때 11월 6일 같은 경우는 오전 9시에 문창회관 3층 학생회실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되는지 여쭙고자 함.

위원장 : 수령 자체는 협의를 통해 일찍 드릴 수 있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는데, 서명을 받다보면 잘못 서명하시는 분들이 계심. 그럴 경우 두 줄 굵고 아래 기입하도록 하시면 되겠음.

이하은 : 11월 14일 오전 8시부터 포스터, 현수막, 유인물, 전부 다 배부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림.

위원장 : 그러함. 추후 설명드리겠지만 포스터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부착하시고 나면 사진과 장소를 기입하신 후 제출해주셔야 함. 어디 붙었는지 모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승인한 매수와 대조해보기 위해 필요함. 또한 부착하신 장소가 규정에 위반된 장소는 아닌지도 검토해야 하기 위하여 양식을 만들어 드리겠음. 또한 선거 운동 기간 종료 이전에 철거를 마무리하셔야 함. 종료 이후 부착되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 받을 수 있음. 단과대학 건물에 붙이실 경우에 각 행정실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선거 운동 기간동안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복잡한 절차를 갈음하여 홍보물을 쉽게 붙일 수 있도록 하겠음. 선거 운동 규칙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음. 별표를 보시면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추천 서명 받는 행위는 준 선거 운동에 해당됨. 그렇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가능한 구역 내에서만 추천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캠퍼스 구역 안내드리겠음. 첫 번째로 대학생활원 관련임. 예를 들어 대학생활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 운동은 입구까지 가능함. 입구라 함은 최초 통과 게이트 카드를 찍고 들어간 최초 통과 게이트 입구까지를 말하는데, 통행 방해 하거나 이용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됨. 그렇다면 어떤 것을 허용하고 금할지 최대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이것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식적인 선에서 선거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음. 두 번째로 구조물 형태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교내에 두 곳 있음. 자유관 옆 주차장과 법학관 앞에 위치한 주차장이 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주차장 경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 다음으로 우리 학교 캠퍼스 총 4개 문에 대한 규정도 말씀드리겠음. 문 4개의 경계는 통행 차단기를 기준으로 함. 차단기 밖으로 나갈 수 없음. 이어서 대운동장의 범위가 있는데, 대운동장 뒤편으로 넘어가는 길에 버스 주차장이 있음. 버스 정류장 앞까지로 규정할 것임. 또, 제2사범관 아래쪽 울타리가 있음. 울타리에서 산성이라는 식당을 갈 수 있는데 해당 구역은 우리 학교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울타리 안쪽까지만 선거운동을 하셔야 함. 다음으로 성학관, 경영관 옆 개구멍이라고 흔히 부르는 통로들이 있는데, 이곳들은 계단 입구까지만 허용됨. 부산캠퍼스 설명을 마치고 양산캠퍼스와 밀양캠퍼스에 대한 설명하겠음. 마찬가지로 대학생활원은 기숙사 앞까지 각 문은 차단기 앞까지 가능하고 밀양캠퍼스 같은 경우 차단기가 따로 있지 않지만 정문의 경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해당 구역까지 가능함. 다만, 정문 옆에 붙은 버스정류장은 학교 내 구역임. 다음으로 아미캠퍼스임. 아미캠퍼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전공의 단계를 밟고 있는 학생들이 실습차 병원에서 근무할 때가 있긴 함. 실제로는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시길 바라며 이용하시고자 하면 마찬가지로의 규정을 따름. 선거 운동 본부의 제재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음. 경고와 주의로 나누어져있고 주의 3회 당 경고 1회임. 경고 3회 시에 해당 선거 운동 본부는 즉시 해산하게 됨. 제재 처리 후 제재 처리 의결 회의를 거쳐 즉시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학생들에게 안내가 됨. 누적 징계 사항과 징계 내용에 대한 처리 과정이 공고가 되며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하시면 재심사를 하게 됨. 더 질의가 없으시면 회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이메일을 알려드리겠음. 해당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 것이며 공문 형태로 주실 필요는 없음.

이창준 : 혹시 기탁금 계좌는 언제 알 수 있는지 궁금함.

위원장 : 후보자 등록 하실 때 알려드릴 예정임. 질문이 더 없으시기 때문에 1차 룰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음.